

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태국



## CHAPTER

## 01

## 수입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원산지 규정	14
통관부서 연락처	18

## CHAPTER

## 02

## 관세정책 및 제도

제1절 관세정책	21
제2절 관세제도	24
제3절 비관세장벽	32

## CHAPTER

## 03

## 검역제도

제1절 식물검역 규정	39
제2절 동물검역 규정	42

## CHAPTER

## 04

## 라벨링제도

제1절 관련 법 및 규정	49
제2절 식품분류	49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52

## 붙임자료

1. 잔류농약 허용기준	60
2. 수입금지 품목	87
3. 자료출처	100

# 수입 통관제도

##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1. 통관수속

#### 가. 수입통관 절차

- “태국 내로 물품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태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 절차

① 수입농산물은 선적화물이 통관 항에 도착하고 Thai Customs Department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태국 내 반입이 불가



② Customs Department는 수입업자에게 선적물 도착통보를 하지 않으며, 도착여부는 운송업자가 통보함. 수입업자는 선적물 도착여부를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필요



③ 해상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는 반드시 통관서류와 함께 송장, 포장리스트, 적재bill 사본, 수입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Customs House에 제출하고 관세 및 Business Tax 지불



④ 총 관세가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방출이 요구되는 경우, Deposit을 낼 수 있음. 관련서류는 반드시 창고로 보내져 검열관이 통관서류에 기록을 해야 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은 추가적 세금이나 벌금이 지불될 때까지 보관됨.



⑤ Port Authority에서 선적물의 크기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양륙비와 보관비를 산정



⑥ 양륙비와 보관비 지불 후, 수입업자가 반드시 영수증과 방출 및 출하 Order를 제출하고 Warehouse Receipt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승인됨. Customs 방출과정은 보통 2-3일 걸림.



⑦ 폐기되거나 반입불허 된 물품에 대한 Customs Department의 Legal Affairs Bureau에 상고 가능

- 수입신고 : 관세청과 연계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함
  - 관련서류 제출 :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 및 필요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제출함
  - 관세 등 제세 납부 : 관련세금 또는 예치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직접 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물품검사 및 반출 :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 받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검사직원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게 된다. 검사한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물품반출을 허락함
- 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거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작업, 보세창고에의 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 수출 가공지역으로의 반출입 등 통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통관 업무는 하역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세관(항만, 지역 또는 공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나. 수입신고서의 전자 제출

- 수입자는 관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이를 관련법과 적하목록 등 참조 파일과 대조하여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을 검증한 후, 승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1차 정확성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에러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료가 수정된 수입신고서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다시 전송해야 함
  -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14자리로 된 전자신고 서류번호를 발급하며 “세금 및 관세 납부 준비완료” 상태로 전환함. 여기에서 유형을 나타내는 한 자리 숫자 “0”은 수입신고를 의미함. 이 경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자 자료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미리 전송한 경우
  - 선박이 일정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참조 파일과 비교해서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 검증작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관련법에 따른 승인/허가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선박 도착보고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
  - 선박 도착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적하목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적하목록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 이 경우 수입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선박 대리인에게 적하목록을 수정할 것을 통지해야 함.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 신고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정자료 접수 후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수입신고 번호를 발급

- 세관 컴퓨터시스템이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기 전, 수입자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자료를 수정할 수 있음
- 번호가 부여된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서비스부서에 수정 신청할 수 있음

■ 전자수입신고서류번호의 숫자 별 의미 ■

X<sup>1</sup> X<sup>2</sup> DD<sup>3</sup> X<sup>4</sup> YY<sup>5</sup> MM<sup>6</sup> NNNNN<sup>7</sup>

1. A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A9DD-1-YYMM-99999]를 초과하면 다음 알파벳 (B,C) 등으로 변경
2. 한자리 (1-9) 0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999를 초과할 때 다음숫자(1,2)로 변경
3. 일자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4. 서류유형을 나타내는 코드
  - 0=수입신고, 1=수출신고, 2=월경신고, 3=화물 선취득 요청, 4=사전 하역 신청, 5=화물 수입신고, 6=특별 월경 신고, 7=특별 원경 수입신고, 8=환적신고
  - A=내국 이동 수입신고, B=국내 이전 수출신고, C=무역 자유지역에서 이전된 수입신고, D=무역 자유지역으로 이전한 수입신고
5.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6.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
7. 0001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

다. 관세 등 제세 납부

- 수입자는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다.
  - 은행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수입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라. 반입물품의 검사 및 양도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해상 적하목록, 항공 적하목록, 육상 적하목록을 입력내용과 대조해서 수입신고 및 진행상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청의 리스크 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위험도(프로필)를 확인하게 된다. 신청인이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물품의 검사명령 또는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면제”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 관세가액 및 물품검사 면제 대상”(그린 라인) 임을 입력하고, 수입신고 현황을 “수입신고필 인도준비 완료”로 자동 전환시킨다.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세관창고에 해당 물품을 수입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서 세관 관할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 대상”(레드 라인)임을 입력하고, 세관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인수받도록 통보한다.

#### 마. 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절차

- 검사 면제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항공 선하증권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수입자가 단일창구통관시스템 상에서 통관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서류(관련법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서류, 관련면허/등록/허가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세관 서비스부서에 제출한 후 통관절차 종료에 따라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세관 서비스부서는 해당 서류의 수령사실을 기록하고 검사공무원이 세관 컴퓨터 시스템의 수입신고에 따라 1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한 서류가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안 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 검사대상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내륙 컨테이너항만을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준비를 한다.
  - 물품검사는 관세율 및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신청인에게 물품의 양도를 통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을 수령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 대상에 대한 인도 전 검사
-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 목록에 있는 물품으로서 리스크 관리대상인 물품은 관세 및 관련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한다.
    - 다음 사유 등으로 인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관세율 및 과세가액에 대한 검사를 희망한 경우

- ① 종전 수입한 물품과 동일유형 및 범주의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②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 등 제 세액이 높게 책정되어, 동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신고서 “비고” 란에 입력한 경우



- 관세율, 과세가액,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설명자료, 서류 또는 전자자료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과세가액의 산정자료로 제출된 서류나 신고서 내용의 진위 및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수입신고서는 보장된 처리 완료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수입자에게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자는 상기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은 ‘과세가액 산정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과세가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은 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과세가액 산정을 완료해야 한다.
  - 신고가액이 ‘과세가액 산정방식 1=수입물품의 구입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관세법 B.E. 2469 규정에 따른 관세청 132호 (B.E. 2543) 및 그 수정 145호 (B.E. 2547) 2장에 명시된 대로 신고가액이 구입가액인 경우, 신고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으로 간주한다.
  - 수입자가 신고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경우

- ① 수입자는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라 신고 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세관공무원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서 각 항목별 증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서비스부서장 및 책임자에게 방식 1에 따라 과태료 없이 과세가액 증액의 승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에 따른 과세가액 범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과 관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④ 수입자는 수입항,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추가 세액 및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추가 세액 및 관세가 납부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 신고가액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 등으로 수입물품의 가액을 ‘과세가액 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 구입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① 수입자가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 세액의 최고금액 까지 추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당해 물품의 견본, 사진, 또는 설명 자료 등을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후,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은 재 사정된 과세가액과 신고품목 통관에 사용된 예치 보증금의 산출근거 등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해당 재평가 가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하는데 요구되는(추가 보증금 예치에 필요한) 세금 및 관세액을 통보한다.
- ④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차후 물품반출을 위한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물품가액의 증가에 대한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동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항 항만, 지역, 공항의사건조사 담당공무원은 세금 및 관세 벌과금, 부과세 벌과금 및 기타 과태료 부과 등 조사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며, 수입자가 예치금을 납부한 후에는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신청인에게 관세 등 제 세액과 과태료 등을 통지한다. 신청인은 금융 부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 ⑥ 수입자는 물품의 반입 항만,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세금 및 관세 보증금과 부가세 및 기타 과태료 등 부족분을 추가로 예치한다. 추가 보증금을 예치한 후에는 동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할 수 있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시킨다.
- ⑦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관세율 산정에 필요한 견본, 사진 및 기타 증거 자료 등을 채취한 후, 물품 반출을 허가한다.
- ⑧ 세관공무원이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자료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 관세법 등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된 경우
  - 관세 EH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되어 물품반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하고 조기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 ①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서의 신고가액 등을 검토하여 관세율 및 제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산정세액이 승인을 요청한다.
- ②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서 정보를 물품이 반입된 항만이나 공항의 법무 부서에 통보하여 사건파일을 작성토록 하고, 물품의 조기 반출 전에는 과태료, 부가세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가 차질 없이 예치될 수 있도록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다. 단, 관련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로 예치해야 할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예치금을 예치하게 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납부 영수증 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서 상황을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로 자동 전환 시킨다.
- ⑤ 세관공무원은 향후 문제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의 사진, 또는 기타 증거자료 등을 채취하고 난 다음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 ⑥ 검사결과에 따라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정보를 ‘케이스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창고에서 물품 인수

-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된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창고에서 물품이 인출되기 전에 세관 서비스부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절차를 수행토록 한다.
- 세관 서비스부서가 이를 수정토록 한 경우, 수입자는 자신이 동 수정작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사.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

- 통관절차 완료 후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당해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가액 또는 관세율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상세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한 후 면세지역이나 수출지역으로 이송할 때 역시, 당해 수입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자세한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아. 보세창고에서의 수행절차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터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배정하여 관세

- 을,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 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한다.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는 인도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자.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 후, 검사대상물품을 공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대상인 경우도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는 여타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 지시가 있는 경우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에게 “관세율, 가격 등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도록 통지하고 창고에 대상물품을 준비하도록 관련 자료를 전송한다.
  - 창고는 당해 물품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창고는 검사를 위해 수입자에 해당물품을 인도한 후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과세가액 확정 후 물품을 반출토록 지시한다.
  - 수입항만이나 공항, 면제지역, 수출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RFID가 도입·운영되는 경우, 출입차량은 코드확인을 위해 RFID 판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차. 수입자의 자료 수정

- B/L 일련번호가 부착된 인도지시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품이 수입되는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세청에서 피드백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가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는, 동 사실을 물품을 수입한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통보하여 사안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검사 부서에 당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물품검사와 반출이 완료된 후 수입신고서 상의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공항만 세관이나 검사장소 또는 반출지 세관의 관리 부서에 별도 수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절 원산지 규정

### 가. 원산지 판정의 일반 원칙

- 수출국가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건
  - 식물 및 식물이 성장한 후 식물로부터 수확되거나 모아진 산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
  - 해당지역에서 가축되거나 태어난 동물에서 얻어진 물건
  - 광물 등 천연자원
  -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서 잡은 수산물 등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RVC(Regional Value Content)를 고려해 FOB 금액의 40%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제조,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Build-Up Method :  $RVC = VOM/FOB \times 100\%$ 
    - ※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가격, 직접노동비, 직접경상비, 운송비, 이익을 포함한 가치
  - Build-Down Method :  $RVC = (FOB - VNM)/FOB \times 100\%$ 
    -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CIF 가격 또는 해당지역에서 원료를 최초로 지불한 가격

- 사용된 원재료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앞자리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함)

#### 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인 AK Form을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소(67개)에서 실시함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해야 함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함.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함

#### 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 서명등록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 (등록서명 1부 포함) 원본 1부 (양식 다운로드)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는 회원 무료, 비회원 55,000원

■ AK Form 양식 ■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and 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and country)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

BRUNEI DARU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origin criteria in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li> <li>-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li> <li>- Regional Value Content</li> <li>-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li> <li>- Specific Processes</li> </ul>	"CTC" "WO-AK" "RVC"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SED SYSTEM NUMBER: The Harmonis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e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 제3절 통관부서 연락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Headquarters	1 Sunthornkosa Road,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100	02-667-7767
Customs Call Centre	< Operating hours > Monday – Friday 08:30 – 16:30	1164	-
Customs Clinic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tax and duty incentives, tariff classification, valuation, etc.	02-667-7880-4 (customs_clinic@customs.go.th)	02-667-7885
Report on smuggling activities and evasion of duty	P.O. Box 10,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002 02-667-7716 (feedbacks@customs.go.th)	02-671-7995

## 관세정책 및 제도

### 제1절 관세정책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
- 태국은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가입국으로 2008. 7월에 개정된 관세율 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태국 관세청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가. 법정관세율

- 2003년 이후 태국의 법정 기본세율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법정(기본)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태국의 실행관세율(일시 또는 조정세율)은 국회의 비준 없이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적용한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필요 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세율 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태국의 법정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관세율 표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과 19등급의 특별세율,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율의 종가세 적용 품목 군에는 민감 품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파,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된다.

### 나. 실행관세율

- 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하여 놓고 있다. 이에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 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로 계상

되어 있다. 그리고 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 일부 IT 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월에 이미 마무리 하였다.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소금, Mineral fuels, Chemicals, Fertilizer, 펄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 등이 있다.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종가세율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 우선 적용된다.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비종가관세율(Non-ad Valorem Duties)

- 특별세율과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종가관세율은 전체 대상품목의 16.5%를 차지한다. 비 종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 이는 태국 관세율 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 ③ 특별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es)

-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Flour, Meal, Pellets of fish, Crustaceans, Mulluscs 등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율을 부과한다. 수입 부과금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그 중 종가의 부과금은 특별관세율에 관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 다. 한-태 협정관세율 체계

### ○ 한-태 협정관세율 개요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고 있다.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6.8월은 상품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 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후 태국 측 요구에 따라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12월에는 최종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0.1월부터 발효되었다.

○ 태국과 관세양허 내용

- 태국의 양허는 일반 품목군과 민간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품목군은 다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일반품목군은 2017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5,209개 품목, 전체품목수의 94.45%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91%에 상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별도의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에 철폐하고 78개 품목은 2017년까지 철폐토록 하는 등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민감 품목군 중 일반 민감 품목의 경우 3.17%에 해당하는 175개 품목 또는 수입액기준 5.2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5% 이내로 관세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초 민감 품목에 131개 대해서는 6개는 2016년까지 관세 50% 인하, 37개는 20% 인하, 6개는 50% 이상 인하, 51개는 최소 수입할당 물량 적용,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 기계 및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고,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철폐 예정이며 철강은 일-태의 EPA 일정에 준하여 관세를 감축하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담배(72%)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제2절 관세제도

### 가. 관세평가제도

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시점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계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 아래의 수입 품목은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선물, 견본, 공짜제품
  - 판매대행 물품(판매를 요청받아 수입하였으나 물품인수자가 판매비용만 받는 경우)
  - 회사의 지점이 수입한 물품
  -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
  - 폐기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자가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 구매자가 아니고 중간 판매자인 중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 ②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 동종물품은 물리적 형태, 품질, 사회적 평판 등에서 당해 수입품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함. 이러한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 운송,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 전후) 태국에 수출되어야 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거래규모 또는 수량이어야 함
  - 태국 내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같은 규모 또는 같은 수량의 동종품목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규모나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거래규모는 같으나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 조정
- 수량은 같고 거래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 조정
- 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규모와 수량을 조정
- 위의 조정에 있어서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결정
- 하나 이상의 동종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한 자에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용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유사한 시기(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태국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함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이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수입물품과 거래규모 및 거래량이 같아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만약 동일 거래규모나 거래량의 유사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규모나 거래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거래규모가 같고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
  - 거래수량이 같고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를 조정
  - 거래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와 수량을 조정
- 만일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정할 수 있음
- 만일 유사물품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④ 공제방법 또는 당해 수입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①~③방법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조건으로 태국에 판매된 수입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만일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최고수량으로 판매된 가격
    - 상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
    - 아래의 원재료, 장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된 가격
      - \* 수입물품에 체화된 원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모듈드 또는 유사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 불가피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
    - 아래의 비용을 공제
      - \* 당해 물품의 태국 내에서 판매와 관련된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계약이 된 커미션
      - \* 태국 내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 세금
  - 단위당 거래가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당해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전 후로 가장 근접한 날에 태국에서 판매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
    - 물품이 수입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수입되어 태국 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의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비용과 가공비를 공제한 가격. 이 가격은 수입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⑤ 원가계산방법

- ①~④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자가 요청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⑤방법을 제④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아래 항목의 합계로 정함
  - 원재료, 부품, 노무비, 가공비, 기계장비, 유지비 등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가공비용. 다만, 수출환급 대상 원재료에 부과되는 생산자의 국내 제세금은 제외
  - 다른 생산자에 의해 태국에 수출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합계
  -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용기 비용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된 재료 및 노무비
  - 아래의 재료 및 장비 비용
    - \* 수입물품에 체화된 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몰드 또는 유사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운임, 운송비, 보험료 등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반하기는 소요되는 비용
  - 생산자의 비용으로 태국 내에서 수행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 용역비

### ⑥ 역산가격

- ①~⑤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가지 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 원칙, 요건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태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2가지 가격이 있을 경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가격체계
  - 수출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원가계산 방법에서 언급된 항목이 아닌 생산 비용
- 태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 최소 과세가격
- 근거 없이 결정된 가격
- 역산가격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법
  - 각 방법의 기간은 1회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의 평가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제 3국에서 수집한 비용, 원재료 가격정보도 계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과 동등한 가격
  - 전문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 나. 관세(사후)심사제도

### ○ 수입 사후심사

#### - 세관사후심사 대상기업 및 관계자의 의무

모든 수출입관련 기업 및 관계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일로부터 5년 이내 문서, 장부 등 기타 관련서류를 자체사무실 및 보관시설에 보관할 의무를 진다. 만약 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기업, 관계자, 정산인은 모든 관련서류를 폐업일로부터 2년 동안 당해 기업 사무실 또는 정산인 사무실 등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련서류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여타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의 사후심사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 태국관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 - 수출입관련 기업 및 관계자 보관서류의 유형 및 종류

- 수출입업자의 경우 : 보관서류는 납세영수증, 수출입허가서,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 관련 서류, 운임 및 보험 지불문서, B/L, L/C, 송장, 물품구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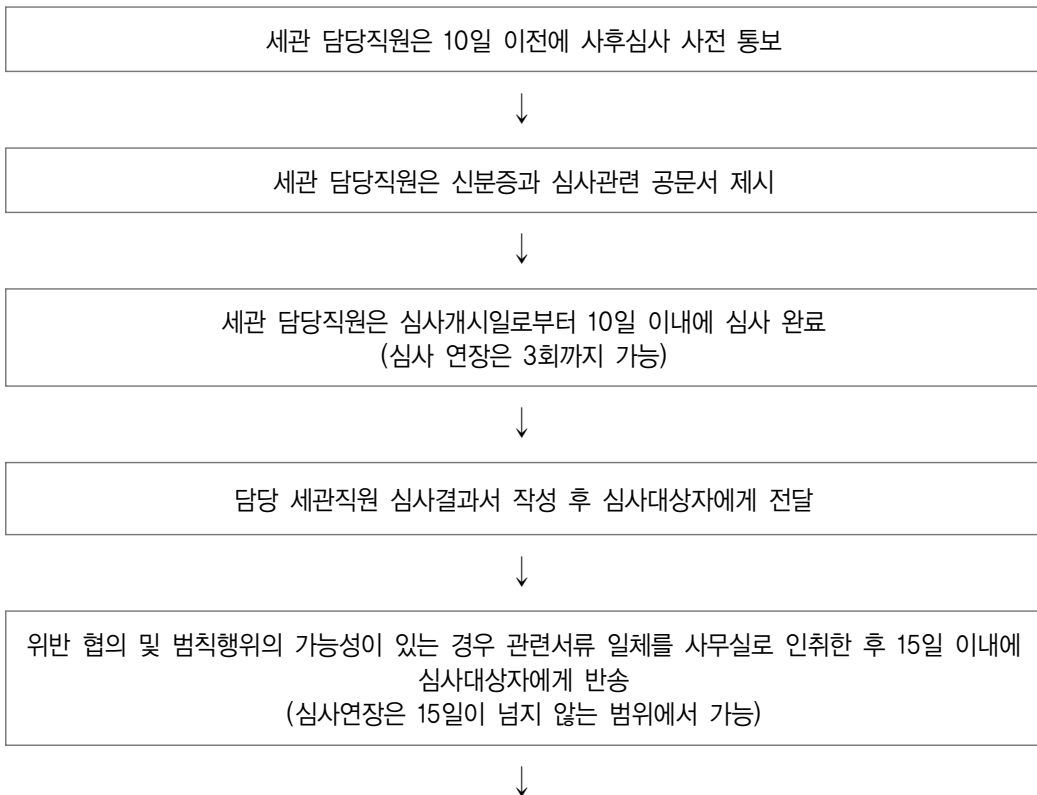
요청/계약/서신, 판권(저작권), 로열티, 커미션, 재고목록, 물품 구매/판매/제조/가격산정 관련 보고서류 등

- 선사 또는 대리점의 경우 : 적한목록, B/L, 운임지불서, 기타 물품운반 관련서류
- 상기 대리인의 경우 : 당해 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 및 선사/대리점이 보관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
- 상기 관계인의 경우 :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소관분야 서류 보관

- 사후심사직원의 권한

담당세관직원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장부, 거래장부, 정보문서, 기타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업체 또는 관계인의 사무실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세관직원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회계 및 거래장부, 기타 관련서류, 증거물 등을 세관사무실로 인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사후심사 절차



사후 심사 담당자는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심사 종료  
(심사연장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범칙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은 상부에 관련서류를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한다.  
관련법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담당직원은 세액 및 벌금 등 관계부서를 통해 차후 법적절차 조치

#### ○ 수출 사후심사

- 세관 사후심사분에서는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또는 전송 받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별기준에 의거 위험도를 분석하게 된다. 각 부서에서 별도의 선별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동 제시자료를 추가하여 위험분석에 사용하게 되면 위험분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함
  - 신고서 첨부서류의 정확성 확인
  - 신고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의 신고내용 확인
  - 컴퓨터에 입력된 신고서 및 상업송장 관련 자료의 확인
  - 승인서, 면제허가서 등 세관 기본서식에 대한 확인
  - 제한물품 여부에 대한 확인, 제한물품에 대해서는 허가서, 면허증 등의 서류의 대한 확인
  - 각종 세율 및 수수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 환율, 과세가격, 관세액의 계산 등에 대한 정확성 확인
  -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수출신고서 원본에 “심사완료”라는 봉인을 날인

#### 다. 관세환급제도

##### ○ 일반원칙

- 관세환급의 일반 원칙

신고서가 관세환급 대상이어야 하며 이는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 신고서 및 관세법 제19조의 2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 물품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행된 신고서가 이에 해당 된다. 관세환급 신고서는 유형에 따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 환급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검토
- 보증금, 관세, 기타 납부금에 대한 환급 및 환급통지 절차
- 보증금 및 관세 환급수표의 발행

## 제3절 비관세장벽

### 1. 태국의 비관세장벽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 이외의 무역관련 절차, 제도 및 규제, 즉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은 국가간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표준, 인증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 개별 기업이 직접 대응하여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 2. 주요 비관세 장벽

#### 가. 표준 및 품질표시(기술인증 등)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해가 발생하고 정식 수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

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 상 특혜를 주고 있다.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 수입 시 검사는 한번이 아닌 매번 수입 시마다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를 번거롭게 하기도 한다.
- 특히, 태국 내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TISI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시행 된다.
- 한국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CB Test를 기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TISI에서 동 인증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샘플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고 태국으로 비료 수입 시 일반타입의 비료가 아닐 경우도 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에서 별도의 테스트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 ○ 태국의 Labeling(Mark) 제도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동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취지 외에 사실상 태국상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태국의 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에서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및 관련부품, 액세서리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서 산업표준원(TISI)으로 하여금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명목으로 성능검사 및 인증서를 요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입 및 국내 생산품에도 적용된다.

## 나. 식품안전

- 태국 역시 식품의 위생과 안전문제와 관련 비관세장벽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WTO SPS협정(위생검역협정)에서는 동 협정의 적용에 있어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 및 기술 등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최소한의 조치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및 식품
  - 태국으로의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 수입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식품 수입허가에는 통상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하는 등 까다롭다.
- 의약품
  - 의약품 수입허가는 성분분석, 검사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수입자는 별도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999년 11월에 발효된 의약품에 관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일부 절감시켰으나 여전히 이전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 일반 의약품 수입검사에는 1,500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의 경우 통상 40,000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된다. 일부 절차가 단순화 되었음에도 아직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령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식품에 대해 태국에서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운송기간 및 검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가산되어 식품의 유통기한 제한에 따른 판매기간 축소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 화장품
  - 화장품의 수입허가는 물론 라벨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성분 등이 식약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 제품공식, 태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 한다는 보증서와 함께 대표자가 태국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 의료장비

- 의료장비를 원하는 업체는 수출국 선적에 앞서 태국 식약청에서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량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입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기업은 태국 내 수입업체에게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게 된다.

##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건은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식품영양성분 표시의무가 상기 SPS협정의 당초 목적을 넘어 무역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쌍방이 상반된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GMO 수입국의 입장을 취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GMO 수출국들의 입장	GMO 수입국들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그 과학적 구성에서 차이가 없을 경우는 기존의 식품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식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li> <li>• 따라서 실질적 동등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동 물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때까지 기존 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다.</li> <li>•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li> </ul>

## 다. 환경보호

- 기술표준의 무역장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것은 환경 기술 장벽이다. 환경 라벨링과 관련 WTO TBT협정에서는 상품 자체만이 아니라 공정 및 제조방법 등 영역에 대해서도 동 협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상의 위해 여부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라. 수출입부과금

- 태국은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품목에 대하여 수출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품수출입법 제5조에서는 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의를 위해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수출입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 6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의 부과 및 그 요율에 대한 수정,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절차 등은 상무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수출입부과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재무성의 국고에 납부되지 않고 국제무역진흥기금에 직접 입금된다. 태국정부는 국제무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국제무역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수출입부과금을 동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금의 집행과 배분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에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수출입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과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가지를 병행하여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검역제도

### 제1절 식물검역 규정

#### 1. 법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
-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

#### 2. 용어의 정의

- 식물(Plant) : 식물과 그 일부분(생사여부 불문)
-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비금지물품(unprohibited material)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이 아닌 식물
- 식물검역장(plant quarantine station)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장소

- 격리검역장(post-entry quarantine station)
  - 식물 및 금지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장소
- 식물병해충방제지구(plant pest control area)
  - 식물병해충을 방제 또는 박멸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지역

### 3.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 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 4.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 5.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고함
  - 감귤병해충의 목록
  -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함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 6.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함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7. 제한물품 수입

- 식물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8.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 9. 수수료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

## 제2절 동물검역 규정

### 1. 동물 수입 검역

####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이 포함된 수입 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조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의 동물 건강 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 동물과 관련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입증해야 함

####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

- 입 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할 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 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바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수입동물은 동물 검역 시설로 이동됨
- 검역 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 동물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이동시 혹은 검역 시 수입될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 동물의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후,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풀어질 시점에 발급될 것임

## 2. 축산물 수입 검역

####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축산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태국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에 준수하여 수입 축산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입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시에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됨.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임



### 3.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동물 혹은 축산물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시 태국에서 환송할 경우 국제동물검역소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

#### ○ 절차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송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함
-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 증명서, 청구서, 가격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이동 승인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함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 시설로 옮겨지며, 소유자는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소유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불해야만 함

### 4. 동물/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 개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함)
- 주택 등록증 사본

#### ○ 법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 대리인 임명 공문
- 대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 무역 허가증 (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될 것임)

## 라벨링제도

### 제1절 관련 법 및 규정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과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규정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태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 관리 대상 식품에 대해서 식품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이 중요한 식품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관리청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 위생처리 증명서를 요구한다.

### 제2절 식품분류

#### 1. 구체적인 관리식품(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 필수요소 등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4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Sodium Cyclamate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te
- Food additives
- Weight-control foods
- Stevioside and food containing Stevioside
- Beverages in sealed containers
- Foods in sealed containers
- Flavored milk
- Yogurt milk
- Cow's milk
- Other milk products
- Ice cream

## 2. 규격화된 식품(Standardized Food)

- 규격화된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한다. 다음의 32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Electrolyte drinks	Tea
Herbal tea	Coffee
Soybean milk in sealed container	Ice
Drinking water in sealed container	Natural mineral water
Peanut oil	Coconut oil
Palm oil	Fat and oil
Butter oil	Butter
Cheese	Margarine
Ghee	Iodized table salt
Vitamin fortified rice	Alkaline-preserved eggs
Cream	Chocolate

Some types of sauces	Vinegar
Fish sauce	Honey
Food seasonings derived from the hydrolysis or fermentation of soybean protein	Jam, jelly, and marmalade in sealed containers
Food supplement	Royal jelly and royal jelly products
Semi-processed food	

### 3. 표준 라벨이 요구되는 식품

- 위의 두 가지 분류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매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며 12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 Special purpose foods, Irradiated foods
  -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 Processed gelatin and jelly, Chewing gum and candy, Bread
  - Sauces in sealed containers, Brine for cooking, Brown rice flour
  - Meat products, Flavoring agent, Ready-to-cook and ready-to-eat foods



육류제품 라벨링 (Meat Products)

#### 4. 일반적인 식품

-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안전성, 라벨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감독된다. 일반식품은 태국 정부고시에 의해 표준 요구사항들을 따르게 된다.

###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 1. 표준라벨

-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식품, 규격 식품, 라벨 부착이 필수로 분류된 수입 식품 또는 국내 식품은 표준라벨을 부착해야 함
  - 태국 라벨은 수입되어 반입되기 전과 수매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착돼 있어야 함.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 FDA에 의해 압수됨
  - 스틱 라벨은 태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승인된 라벨과 식품 포장 크기는 단일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함

####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의 알파벳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FDA로부터 일부 내용의 생략을 허가 받는 경우는 가능함
  - 식품명, 식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정량(고체제품의 실중량, 용액제품의 실용량, 반고체제품의 실 중량과 실 용량, 기타 식품은 실 중량 표시)
  - 봉인된 용기에 있는 식품은 실 내용물을 표시하며 용액부분을 제외한 고형량

을 표시함. 식재료에서 용액부분만 나눌 수 없는 제품은 제외됨. 기본적으로 내용물의 리스트는 전체 퍼센트로 나타내며 주요 내용물부터 시작함. 농축된 제품 또는 사용전 희석·용해가 필요한 제품은 희석·용해 제품의 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은 “방부제 사용”을 표시
- 색소 사용 시 “천연색소 첨가” 또는 “인공색소 첨가”를 표시
- 조미료 사용 시 “----- 조미료 첨가” 표시
- 감미료 사용 시 “----- 감미료 첨가”를 글자크기 2mm 이상과 글자색은 배경의 보색으로 표시
- 향신료 사용 시 “천연향” 또는 “인공향”을 표시
- 제조일자(연/월/일 또는 연/월), 유통기한(연/월/일), 최적 상태의 제품 품질보증 기한(연/월/일) 표시. “제조”, “만료”, “사용 전”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내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상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FDA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제품의 유통기한(연/월/일)

### 3. 제조업체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

- 영어 알파벳이 일부 포함된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은 태국어 라벨을 사용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함
  - 식품종류와 이름, 식품의 시리얼 번호
  - 미터법으로 표시된 제품용량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4. 일부 가공식품의 라벨링 변경공시

- 2009년 8월 30일 태국 FDA는 식품 라벨링 필요조건의 측정과 스낵 식품에서 사용되는 라벨링 로고 필수조건을 철회하였으며 가공식품의 보존유지 필수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공시하였음
- 하지만 태국 FDA는 스낵식품에 관련된 문제들은 보건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여 라벨링 경고 메시지를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합시다.”로 변경하였음
  - 라벨링 부착 대상제품 : 감자칩, 옥수수 칩, 스낵 식품, 비스킷/크래커, 와플제품



스낵 식품 라벨링

#### 5.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

-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태국 FDA는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건부 공시를 변경하였음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의 최고의 식품이다
  -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추천된 것이어야 한다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
-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 6. 영양 정보 라벨링(Nutrition labeling)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FAD에 의해 지정된 식품
- 영양분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은 유아용 식품과 유소아를 위한 보충식품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식품들은 제외됨
- 영양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은 선택임



영양성분 라벨링 예

## 7. 영양 성분표시(Nutritional Claims)

- 영양 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의 상태 및 내포한 것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유량,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표현한 것임
- 태국 FDA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Low in cholesterol”,

“less”, “reduc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 조금은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 아울러 영양성분의 크기, 참고량, 나라별 일일섭취량을 표현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가. 영양성분 주장

- 영양성분 주장은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수준을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칼슘의 원료”, “저지방 고섬유질”로 표기할 수 있음
- 식품의 본연의 성질을 잃거나 영양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이 “free” 또는 “low” 라는 용어를 식품명에 포함해서는 안됨. 한편 가공, 변환, 일정한 공법을 이용해서 식품에서 영양분을 제거하거나 영양분의 양을 낮추는 행위는 영양분 청구에 의해서 규제됨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			
Servings Per Container: .....			
<b>Amount Per Serving</b>			
<b>Total Calories</b> ... .. kcal (Calories from Fat ... kcal)			
<b>Total Fat</b>	.....g	% Recommended Daily Intakes *	
Saturated Fat	.....g	.....%	
<b>Cholesterol</b>	.....mg	.....%	
<b>Protein</b>	.....g	.....%	
<b>Total Carbohydrate</b>	.....g	.....%	
Dietary Fiber	.....g	.....%	
Sugars	.....g	.....%	
<b>Sodium</b>	.....mg	.....%	
% Recommended Daily Intakes *			
<b>Vitamin A</b>	.....%	<b>Vitamin B1</b>	.....%
<b>Vitamin B2</b>	.....%	<b>Calcium</b>	.....%
<b>Iron</b>	.....%		
* Percent recommended daily intakes are based on a 2,000 kcal diet for Thais aged six and upwards.			
Individual calorie needs may differ. Based on a 2,000 kcal daily diet, the nutrient intakes shall be as follows.			
Total Fat	Less than	65	g
Saturated Fat	Less than	20	g
Cholesterol	Less than	300	mg
Total Carbohydrate		300	g
Dietary Fiber		25	g
Sodium	Less than	2,400	mg
Calories (kcal) per gram: Fat = 9; Protein = 4; Carbohydrate = 4			

나. 상대적인 주장

- 상대적인 주장은 2가지 이상의 식품에너지 또는 영양성분 기준을 비교하는 것

을 말하며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함

- 하지만 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분 성분 또는 에너지 값을 표시한 경우 상대적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

#### 다. 영양분 기능 청구

- 영양분 기능 청구란 인체에 미치는 영양성분과 관계가 있으며 “갈숨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 성분은 적혈구 조성의 요소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임
- 영양분 기능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기되도록 허가되었으며 모든 조항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태국 RDI에 등재된 필수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의 대상이 됨
  - 식품의 주요 재료가 되는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를 표시해야 함
  - 특별한 식품 성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청구를 만드는 데 참조되어야 함
  - 영양성분 청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영양성분 주장은 질병 치료 또는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내포해서는 안 됨

#### 라. 유전자 변형식품

- 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가공업과 사료용인 경우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라벨링 법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식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식품들이 라벨링 법에 관리대상 품목임
  - 콩, 조리된 콩, 구운 콩,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콩, 낫도(Fermented soybean), 미소, 두부 또는 튀긴 두부, 냉동 두부, 콩 글루텐, 두유, 콩가루, 조리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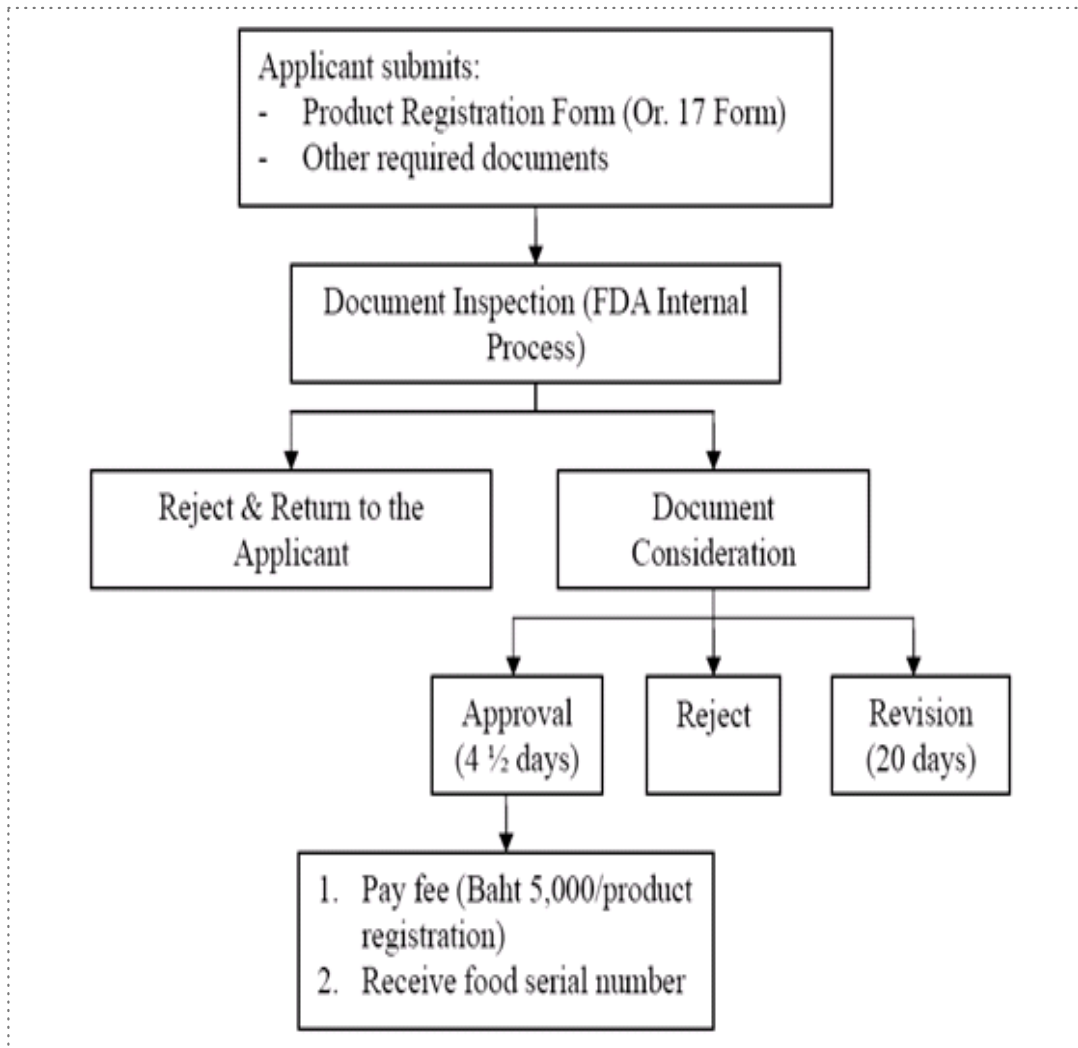
- 옥수수, 팝콘, 냉동/냉장 옥수수,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옥수수,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식품



두부제품 표시사항

- 라벨링은 주요 3가지 원료를 무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원료들이 최종 식품의 5% 이상 구성되고 유전자 변형 원료들에서 추출한 원료들이 5% 이상 된 식품들은 라벨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 라벨링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식품이 압수되면, 태국 정부 조사관에 의해 유전자 변형식품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식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와 수입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

## 8. 라벨링 승인절차



〈 붙임 1 : 잔류농약 허용기준 〉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1	Chlorpyrifos	Chlorpyrifos	Okra	0.5
			Banana	2
			Rice <sup>1</sup>	0.1
			Spices, seeds <sup>2</sup>	5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1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1
			Rambutan	0.5
			Peanut	0.05
			Soya bean (dry)	0.1
			Soya bean (immature seeds)	0.1
			Oil Palm	0.05
			Peppers, Chili	0.5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Coconut	0.05
			Sweet potato	0.05
			Longan	1
			Litchi	2
			Shallot	0.2
			Onion, Bulb	0.2
			Cattle meat	1 (fat)
			Meat of goats and sheep	1 (fat)
			Cattle, Edible offal of	0.01
			Goat and Sheep, Edible offal of	0.01
			Pig meat	0.02 (fat)
			Pig, Edible offal of	0.01
			Poultry meat	0.01 (fat)
			Poultry, Edible offal of	0.01
Eggs	0.01			
Milks	0.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2	Chlorothalonil	Chlorothalonil	Peanut	0.05
			Soya bean (dry)	0.2
			Soya bean (immature seeds)	2
			Chinese cabbage	1
			Kale	4
			Tomato	5
			Potato	0.2
3	Carbaryl	Carbaryl	Lead tree leaves	0.02
			Sweet corn (corn-on-the-cob)	0.1
			Baby corn	0.1
			Maize	0.02
			Sorghum	0.5
			Rice <sup>1</sup>	1
			Rambutan	1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3
			Watermelon	1
			Peanut	2
			Durian	1
			Oil Palm	0.02
			Brassica Vegetables	5
			Peppers, Chili	0.5
			Peppers, Chili (dried) <sup>5</sup>	2
			Peppers, Sweet	5
			Coconut	0.02
			Mango	1
			Mangosteen	1
			Potato	0.2
Cacao beans	0.02			
Cashew nut	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Longan	1
			Litchi	1
			Citrus fruits	15
			Grapes	5
			Sugar cane	0.02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Edible offal (Mammalian)	1
			Poultry meat	0.05
			Eggs	0.5
			Milks	0.05
4	Carbendazim / benomyl	Sum of carbendazim, benomyl and thiophanate-methyl, expressed as carbendazim	Chives	3
			Rice <sup>1</sup>	2
			Rambutan	3
			Onion, Spring	3
			Mung bean (dry)	0.5
			Peanut	0.1
			Soya bean (dry)	0.5
			Soya bean (immature seeds)	3
			Mulberry leaves	0.1
			Peppers, Chili	2
			Peppers, Chili (dried) <sup>5</sup>	15
			Tomato	0.5
			Mango	5
			Cotton seed	0.1
			Asparagus	0.2
			Shallot	3
			Onion, Bulb	3
			Grapes	3
			Sugar cane	0.1
			Cattle meat	0.05
			Edible offal (Mammalian)	0.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Edible offal of	0.1
			Eggs	0.05
			Milks	0.05
5	Carbosulfan	Carbosulfan	Okra	0.5
			Lead tree leaves	0.2
			Sweet corn (corn-on-the-cob)	0.05
			Baby corn	0.05
			Maize	0.05
			Sorghum	0.05
			Rice <sup>1</sup>	0.2
			Rambutan	0.2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0.5
			Watermelon	0.2
			Mung bean (dry)	0.05
			Yard-long bean (pods)	0.1
			Garden pea (young pods)	0.1
			Peanut	0.05
			Soya bean (dry)	0.05
			Soya bean (immature seeds)	0.5
			Durian	0.2
			Oil Palm	0.05
			Brassica Vegetables	0.5
			Peppers, Chili	0.5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Tomato	0.5
			Thai egg plant	0.5
			Egg plant	0.5
			Coconut	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Sweet potato	0.05
			Potato	0.05
			Coffee beans	0.05
			Cacao beans	0.05
			Sesame seed	0.2
			Sunflower seed	0.05
			Cotton seed	0.05
			Linseed	0.05
			Citrus fruits	0.1
			Asparagus	0.5
			Grapes	0.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Edible offal (Mammalian)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Edible offal of	0.05
			Eggs	0.05
			Milks	0.03
6	Carbosulfan	Sum of carbofuran, 3-hydroxy carbofuran and (conjugated 3-Hydroxycarbofuran), expressed as carbofuran	Okra	0.5
			Lead tree leaves	0.2
			Rambutan	0.1
			Garden pea (young pods)	0.2
			Durian	0.1
			Oil Palm	0.1
			Brassica Vegetables	0.2
			Peppers, Chili	0.5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Thai egg plant	0.5
			Egg plant	0.5
			Coconut	0.1
			Sweet potato	0.2
			Potato	0.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Cacao beans Sesame seed Sunflower seed Linseed Citrus fruits Asparagus Grapes	0.05 0.1 0.05 0.1 0.1 0.5 0.1
7	Carbofuran	Sum of carbofuran, 3-hydroxycarbofuran, and conjugated 3-Hydroxycarbofuran expressed as carbofuran	Banana Sweet corn (corn-on-the-cob) Baby corn Maize Sorghum Rice <sup>1</sup>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Watermelon Mung bean (dry) Yard-long bean (pods) Peanut Soya bean (dry) Soya bean (immature seeds) Pepper, Black and White Tomato Cassava Coffee beans Cotton seed Sugar cane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Edible offal (Mammalian) Poultry meat	0.1 0.1 0.1 0.05 0.1 0.1 0.3 0.1 0.2 0.1 0.1 0.2 0.5 1 0.1 0.2 1 0.1 0.1 0.05 0.05 0.08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Edible offal of	0.08
			Eggs	0.1
			Milks	0.05
8	Captan	Captan	Barley	0.1
			Peanut	5
			Soya bean (dry)	5
			Soya bean (immature seeds)	5
			Oil Palm	5
			Mango	5
			Cotton seed	5
			Grapes	10
9	Quintozene	Quintozene	Spices, seeds <sup>2</sup>	0.1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02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2
10	Cypermethrin	Cypermethrin	Okra	0.5
			Sweet corn (corn-on-the-cob)	0.05
			Baby corn	0.05
			Maize	0.05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1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2
			Yard-long bean (pods)	0.05
			Garden pea (young pods)	0.05
			Soya bean (dry)	0.05
			Soya bean (immature seeds)	5
			Durian	1
			Brassica Vegetables	1
			Peppers, Chili	1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Tomato	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Eggplant, Thai eggplant and other eggplant-type commodities; except Tomato	0.2
			Mango	0.5
			Cotton seed	0.2
			Longan	1
			Litchi	0.5
			Citrus fruits	2
			Asparagus	0.5
			Shallot	0.1
			Onion, Bulb	0.1
			Sugar cane	0.05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2 (fat)
			Edible offal (Mammalian)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Edible offal of	0.05
			Eggs	0.05
			Milks	0.05 F
11	2, 4- D	Sum of 2,4-D and its salts and esters, expressed as 2,4-D	Sweet corn (corn-on-the-cob)	0.05
			Baby corn	0.05
			Maize	0.05
			Sorghum	0.01
			Rice <sup>1</sup>	0.1
			Spring Onion	0.05
			Pineapple	0.05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Edible offal (Mammalian)	1
			Poultry meat	0.05
			Poultry, Edible offal of	0.05
			Eggs	0.01
			Milks	0.01
12	Deltamethrin	Sum of deltamethrin alpha-R and trans- deltamethrin (fat soluble)	Garlic	0.1
			Baby corn	0.05
			Maize	1
			Sweet corn (corn-on-the-cob)	0.05
			Spring Onion	0.5
			Yard-long bean (pods)	0.2
			Oil Palm	0.05
			Pak-choi	0.5
			Chinese cabbage	0.5
			Kale	0.5
			Brassica Vegetables; except Chinese Cabbages, Pak-choi and Kale	0.1
			Peppers, Chili	0.5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Tomato	0.3
			Mango	0.5
			Cotton seed	0.05
			Cashew nut	0.02
			Asparagus	0.5
			Shallot	0.1
			Onion, Bulb	0.05
			Sugar cane	0.05
			Cattle meat	0.5 (fat)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Meat of goats and sheep	0.5 (fat)
			Cattle, Edible offal of	0.03
			Edible offal of Goat and Sheep	0.03
			Pig meat	0.5 (fat)
			Pig, Edible offal of	0.03
			Poultry meat	0.1 (fat)
			Poultry, Edible offal of	0.02
			Poultry fat	0.1 (fat)
			Eggs	0.02
			Milks	0.05 F
13	Dichlorvos	Dichlorvos	Spices, entire group <sup>6</sup>	0.1
			Citrus fruits	0.2
			Cereal grains	0.2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Poultry meat	0.05
			Milks	0.02
14	Dicofol	<b>Plant commodities :</b>	Spices, seeds <sup>2</sup>	0.05
		Dicofol (Sum of o,p' & p,p'- isomers) (fat soluble)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1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1
			Cucumber	0.5
			Mung bean (dry)	0.1
		<b>Animal commodities :</b>	Soya bean (dry)	0.05
		Sum of dicofol and 2,2- dichloro-1, 1-bis(4- chlorophenyl)	Tomato	1
			Cattle meat	3 (fat)
			Cattle, Edible offal of	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Ethanol (p,p' - FW 152), expressed as dicofol  (fat soluble)	Poultry meat	0.1 (fat)
			Poultry, Edible offal of	0.05
			Eggs	0.05
			Milks	0.1 F
15	Groups of dithiocarbamates: zineb, thiram, propineb, maneb, and mancozeb	Total dithiocarbamates, determined and expresses as CS <sub>2</sub>	Okra	0.2
			Garlic	0.5
			Rice <sup>1</sup>	0.05
			Rambutan	4
			Spring Onion	10
			Cucumber	2
			Melon except Watermelon	0.5
			Watermelon	1
			Peanut	0.1
			Soya bean (dry)	0.06
			Soya bean (immature seeds)	0.2
			Durian	5
			Oil Palm	0.1
			Chinese cabbage	5
			Kale	15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except Cucumber, Melons, Watermelon and Pumpkins	1
			Water spinach (KangKuang)	0.3
			Taro	0.1
			Peppers, Chili	2
			Peppers, Sweet	1
			Pumpkins	0.2
			Tomato	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Lime	2
			Mango	2
			Potato	0.2
			Citrus fruits	2
			Asparagus	0.1
			Shallot	0.5
			Onion, Bulb	0.5
			Grapes	2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Edible offal (Mammalian)	0.1
			Poultry meat	0.1
			Poultry, Edible offal of	0.1
			Eggs	0.05
			Milks	0.05
16	Dimethoate	Dimethoate	Sorghum	0.01
			Spices, seeds <sup>2</sup>	5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5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1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1
			Yard-long bean (pods)	1
			Beans (dry)	0.1
			Tomato	2
			Cotton seed	0.05
			Citrus fruits	5
			Shallot	0.05
			Onion, Bulb	0.05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Fat (Mammalian)	0.05
			Edible offal (Mammalian)	0.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Edible offal of	0.05
			Eggs	0.05
			Milks	0.05
17	Diazinon	Diazinon	Sweet corn (corn-on-the-cob)	0.02
			Baby corn	0.02
			Maize	0.02
			Sorghum	0.02
			Spices, seeds <sup>2</sup>	5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1
			Teas	0.1
			Chinese cabbage	0.05
			Kale	0.05
			Brassica Vegetables, except Chinese cabbage and Kale	0.5
			Coffee beans	0.2
			Cotton seed	0.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2 (fat)
			Edible offal (Mammalian)	0.03
			Poultry meat	0.02
			Poultry, Edible offal of	0.02
			Eggs	0.02
Milks	0.02 F			
18	Triazophos	Triazophos	Garlic	0.05
			Sorghum	0.05
			Mung bean (dry)	0.2
			Peanut	0.05
			Soya bean (dry)	0.05
			Soya bean (immature seeds)	0.2
			Jujube	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Coffee beans	0.05
			Cacao beans	0.05
			Sesame seed	0.05
			Sunflower seed	0.05
			Shallot	0.05
			Onion, Bulb	0.05
			Grapes	0.02
			Cattle meat	0.01
			Poultry meat	0.01
			Milks	0.01
19	Permethrin	Permethrin	Spices, entire group <sup>6</sup>	0.05
20	Paraquat	Paraquat cation	Sweet corn (corn-on-the-cob)	0.05
			Baby corn	0.05
			Maize	0.1
			Sorghum	0.03
			Rice <sup>1</sup>	0.1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0.02
			Beans (dry)	0.5
			Soya bean (dry)	0.1
			Fruits (inedible peel), except Citrus fruits	0.01
			Leafy vegetables	0.07
			Root and tuber vegetables	0.05
			Tomato	0.05
			Potato	0.2
			Cotton seed	0.2
			Strawberry	0.01
			Citrus fruits	0.02
			Grapes	0.0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05
			Edible offal (Mammalian)	0.05
			Poultry meat	0.005
			Poultry, Edible offal of	0.005
			Eggs	0.005
			Milks	0.005
21	Pirimiphos-Methyl	Pirimiphos-Methyl	Sweet corn (corn-on-the-cob)	1
			Baby corn	1
			Maize	1
			Rice <sup>1</sup>	7
			Spices, seeds <sup>2</sup>	3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0.5
			Oil Palm	0.1
			Cacao beans	0.05
			Kapok seed	0.1
			Cashew nut	0.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1
			Edible offal (Mammalian)	0.01
			Poultry meat	0.01
			Poultry, Edible offal of	0.01
			Eggs	0.01
			Milks	0.01
22	Prothiofos	Prothiofos	Mung bean (dry)	0.05
			Peanut	0.05
			Peppers, Chili	3
			Potato	0.05
23	Profenofos	Profenofos	Cabbages, Head	1
			Rose apple	0.05
			Onion, Spring	0.05
			Soya bean (dry)	0.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Durian Cotton seed oil Brassica Vegetables except Cabbages, Head Peppers, Chili Peppers, Sweet Peppers, Chili (dried) <sup>5</sup> Tomato Lime Mango Mangosteen Cotton seed Citrus fruits Shallot Onion, Bulb Grapes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Edible offal (Mammalian) Poultry meat Poultry, Edible offal of Eggs Milks	0.05 0.05 0.5 5 0.5 35 2 0.05 0.2 5 2 0.1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2 0.01
24	Fenvalerate	Fenvalerate	Cabbages, Head Sweet corn (corn-on-the-cob) Baby corn Yard-long bean (pods) Peanut Soya bean (dry) Oil Palm	3 0.1 0.1 1 0.1 0.1 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Chinese cabbage	1
			Kale	10
			Brassica Vegetables, except Chinese cabbage and Kale	2
			Tomato	1
			Mango	1
			Potato	0.05
			Cotton seed	0.2
			Longan	1
			Litchi	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1 (fat)
			Edible offal (Mammalian)	0.02
			Milks	0.1 F
25	Fenitrothion	Fenitrothion	Sweet corn (corn-on-the-cob)	1
			Baby corn	1
			Maize	1
			Rice <sup>1</sup>	1
			Spices, seeds <sup>2</sup>	7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1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1
			Teas	0.5
			Soya bean (dry)	0.5
			Soya bean (immature seeds)	0.5
			Coffee beans	0.05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Poultry meat	0.05
			Eggs	0.05
			Milks	0.0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26	Phosalone	Phosalone	Spices, seeds <sup>2</sup>	2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2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3
			Spring Onion	1
			Yard-long bean (pods)	1
			Garden pea (young pods)	1
			Soya bean (dry)	0.05
			Soya bean (immature seeds)	0.5
			Durian	1
			Mulberry leaves	0.1
			Brassica Vegetables	1
			Peppers, Chili	1
			Peppers, Sweet	1
			Peppers, Chili (dried) <sup>5</sup>	7
			Tomato	1
			Thai egg plant	1
			Egg plant	0.5
			Mangosteen	1
			Cotton seed	1
			Citrus fruits	1
Asparagus	0.5			
Shallot	1			
Onion, Bulb	1			
27	Folpet	Folpet	Rambutan	0.1
28	Phenthoate	Phenthoate	Spices, seeds <sup>2</sup>	7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29	Malathion	Malathion	Cabbages, Head	8
			Sweet corn (corn-on-the-cob)	0.02
			Baby corn	0.02
			Maize	0.05
			Sorghum	3
			Spices, seeds <sup>2</sup>	2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1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5
			Cauliflower	0.5
			Spring Onion	5
			Broccoli	5
			Chinese cabbage	8
			Kale	3
			Peppers, Chili	0.1
			Peppers, Chili (dried) <sup>5</sup>	1
			Tomato	0.5
			Cassava	0.5
			Citrus fruits	7
			Shallot	1
			Onion, Bulb	1
Sugar cane	0.01			
30	Metalaxyl	Metalaxyl	Sweet corn (corn-on-the-cob)	0.05
			Baby corn	0.05
			Maize	0.05
			Spices, seeds <sup>2</sup>	5
			Cucumber	0.5
			Melon except Watermelon	0.2
			Watermelon	0.2
			Durian	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Angled loofah Kale Water spinach (KangKuaq) Taro Pepper, Black and White Betel leaves Pumpkins Wax gourd Potato Citrus fruits Pineapple Onion, Bulb Grapes	0.2 2 2 0.5 0.05 0.05 2 0.2 0.05 5 1 2 1
31	Methidathion	Methidathion	Rambutan Durian Custard apple Pear Citrus fruits Grapes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Edible offal (Mammalian) Poultry meat Poultry, Edible offal of Eggs Milks	0.5 0.5 0.5 0.2 0.5 0.2 0.02 0.02 0.02 0.02 0.02 0.001
32	Methomyl	Sum of methomyl and thiodicarb, expressed as methomyl	Okra Sweet corn (corn-on-the-cob) Baby corn Maize Sorghum	2 0.1 0.1 0.02 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0.2
			Watermelon	0.2
			Mung bean (dry)	0.05
			Yard-long bean (pods)	1
			Peanut	0.1
			Soya bean (dry)	0.2
			Soya bean (immature seeds)	0.1
			Soya bean oil	0.2
			Cotton seed oil	0.04
			Pear	0.2
			Peppers, Chili	0.7
			Peppers, Chili (dried) <sup>5</sup>	5
			Tomato	0.5
			Eggplant, Thai eggplant and other eggplant-type commodities; except Tomato	0.2
			Lime	1
			Potato	0.02
			Sesame seed	0.2
			Cotton seed	0.2
			Citrus fruits	1
			Asparagus	2
			Shallot	0.2
			Onion, Bulb	0.2
			Grapes	1
			Apple	0.2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2
			Edible offal (Mammalian)	0.02
			Poultry meat	0.02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Edible offal of	0.02
			Eggs	0.02
			Milks	0.02
33	Lambda-cyhalothrin	Lambda-cyhalothrin	Okra	0.2
			Sorghum	0.2
			Rambutan	0.5
			Mung bean (dry)	0.2
			Soya bean (dry)	0.2
			Soya bean (immature seeds)	0.2
			Durian	0.5
			Oil Palm	0.02
			Brassica Vegetables	0.2
			Mango	0.1
			Cacao beans	0.02
			Sesame seed	0.2
			Kapok seed	0.02
			Cotton seed	0.02
			Longan	0.5
			Litchi	0.5
			Asparagus	0.02
34	Acephate	Acephate	Spices, entire group <sup>6</sup>	0.2
			Mung bean (dry)	0.02
			Peanut	0.02
			Coffee beans	0.02
			Cacao beans	0.02
			Cotton seed	2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5
			Edible offal (Mammalian)	0.05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meat	0.01
			Poultry, Edible offal of	0.01
			Eggs <sup>5</sup>	0.01
			Milks	0.02
35	Atrazine	Atrazine	Sweet corn (corn-on-the-cob)	0.1
			Baby corn	0.1
			Maize	0.1
			Pineapple	0.1
			Sugar cane	0.1
36	Abamectin	Abamectin	Watermelon	0.01
			Yard-long bean (pods)	0.01
			Garden pea (young pods)	0.01
			Pak-choi	0.01
			Kale	0.01
			Brassica Vegetables	0.01
			Peppers, Chili	0.02
			Peppers, Sweet	0.02
			Peppers, Chili (dried) <sup>5</sup>	0.2
			Thai egg plant	0.02
			Lime	0.01
			Cotton seed	0.01
			Citrus fruits	0.0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01
			Fat (Mammalian)	0.1
			Edible offal (Mammalian)	0.1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Poultry meat	0.01
			Poultry, Edible offal of	0.02
			Eggs	0.01
			Milks	0.005
37	Ametryn	Ametryn	Teas	0.05
			Coffee beans	0.05
			Pineapple	0.05
			Sugar cane	0.2
38	Ethephon	Ethephon	Banana	2
			Cherries	3
			Durian	2
			Mango	2
			Pineapple	2
			Grapes	1
			Apple	1
			Meat (from mammals other than marine mammals)	0.1
			Edible offal (Mammalian)	0.2
			Poultry meat	0.1
			Poultry, Edible offal of	0.2
			Eggs	0.2
			Milks	0.05
39	Ethion	Ethion	Spices, seeds <sup>2</sup>	3
			Spices, fruits or berries <sup>3</sup>	5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3

No.	Pesticides	Residue definition	Commodities	Maximum Residue Limit (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Cucumber and other Cucurbits, except Watermelon	0.3
			Beans (dry)	1
			Beans and Peas (green pods and immature seeds)	1
			Peppers, Chili	3
			Peppers, Chili (dried) <sup>5</sup>	20
			Tomato	0.3
			Eggplant, Thai eggplant and other eggplant-type commodities; except Tomato	0.3
			Lime	1
			Citrus fruits	1
40	Iprodion	Iprodion	Spices, seeds <sup>2</sup>	0.05
			Spices, roots or rhizome <sup>4</sup>	0.1
41	Omethoate	Omethoate	Lead tree leaves	0.01
			Mung bean (dry)	0.05
			Soya bean (dry)	0.05
			Cassava	0.05
			Coffee beans	0.01
			Cotton seed	0.05

Commodities	Extraneous Maximum Residue (EMRL) (milligrams of pesticide residue per 1 kilogram of the commodity, mg /kg)				
	Aldrin <sup>7</sup> and dieldrin	Chlordane <sup>8</sup>	DDT <sup>9</sup>	Endrin <sup>10</sup>	Heptachlor <sup>11</sup>
- Cereal grains	0.02	0.02	0.1	0.01	0.02
- Fruits	0.05	0.02	0.01	0.01	0.01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	0.02	-	-	0.05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and Root and tuber vegetables	0.05	-	-	-	-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	-	-	0.01	-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arrot	-	-	0.01	-	-
-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0.1	-	-	0.05	-
- Root and tuber vegetables	0.1	-	-	-	-
- Carrot	-	-	0.2	-	-
- Plants for sugar	0.05	0.02	0.01	0.01	0.01
- Plants for beverages	0.2	0.02	0.01	0.01	0.05
- Nuts and Seeds	0.05	0.02	0.01	0.01	0.02
- Pulses and Oil seeds	0.05	0.02	0.01	0.01	0.02
- Vegetable fats and oils	0.2	0.02	0.05	0.05	0.02
- Animal fats and oils	0.2	0.05	1	0.05	0.2
- Mammalian meat and edible offal	0.2 (fat)	0.05 (fat)	5 (fat)	0.05 (fat)	0.2 (fat)
- Poultry meat and edible offal	0.2 (fat)	0.05 (fat)	0.3 (fat)	0.1 (fat)	0.2 (fat)
- Meat of aquatic animals, molluscs, and invertebrate animals	0.2 (fat)	0.05 (fat)	1 (fat)	0.05 (fat)	0.2 (fat)
- Meat of amphibians and reptiles	0.2 (fat)	0.05 (fat)	1 (fat)	0.05 (fat)	0.2 (fat)
- Eggs	0.1	0.02	0.1	0.005	0.05
- Milks	0.006 F	0.002 F	0.02 F	0.0008 F	0.006 F

**Explanation**

n.<sup>1-6</sup>

Rice<sup>1</sup> : in this standard means Rice (*Oryza sativa* Linn.)

Spices, seeds<sup>2</sup> : The commodities in this group include, but not limited to, coriander seed, fennel.

Spices, fruits or berries<sup>3</sup> : The commodities in this group include, but not limited to, pepper (black, white), cardamom, and anise.

Spices, roots or rhizome<sup>4</sup> : The commodities in this group include, but not limited to, ginger, galangal, and turmeric.

Peppers, Chili (dried)<sup>5</sup> : in this standard means dried chili peppers made from chili peppers such as bird chili (*Capsicum frutescens* Linn), chili spur pepper (*Capsicum annuum* Linn. *Var acuminatum* Fingerh), Green pepper (*Capsicum annuum* Linn.).

Spices, entire group<sup>6</sup> : The commodities in this group include, but not limited to, seeds, fruits or berries, roots or rhizomes, bark (such as cinnamon bark), buds (such as cloves) and all other spices.

v.<sup>7-11</sup> specify the analytical procedure to express the amount of pesticide residue as follows:

<sup>7</sup> Aldrin and dieldrin shall be the sum of HHDN and HEOD (fat soluble)

<sup>8</sup> Chlordane in plant derived food shall be the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fat soluble)  
Chlordane in animal derived food shall be the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and oxychlordane (fat soluble).

<sup>9</sup> DDT shall be the sum of (p, p'-DDT), (o,p'-DDT), (p,p'-DDE) and {p,p'-TDE (DDD)} (fat soluble).

<sup>10</sup> Endrin shall be the sum of endrin and delta-keto-endrin (fat soluble).

<sup>11</sup> Heptachlor shall be the sum of heptachlor and heptachlor epoxide (fat soluble).

g. "F" indicated after the MRL of milk and milk product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in milk and milk products expressed on a whole product based. In addition, criteria for using the MRL with "F" are as follows:

(1) For a "milk product" with a fat content less than 2 %, the MRL applied should be as half of those specified for milk.

(2) For a "milk product" with a fat content of 2 % or more, the MRL applied should be 25 times of the established MRL for milk, expressed on a fat basis.

4. (fat) indicated after the MRL of meat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 applied to the fat of meat.



< 붙임 2 : 수입금지 품목 >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1	<p style="text-align: center;"><b>Plant</b></p> Plant in the genus <i>Citrus</i> , <i>Fortunella</i> and <i>Poncirus</i>	Africa Australia Central America Ceylon Europe India Indonesia Japan Near East Mediterranean Region South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eserved food.</li> <li>2. Oranges (including navels, valencias, mandarins and its hybrids such as tangor), lemons,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from Australi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ification : Conditions for Im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Australia to Thailand dated 15 June 2004.</li> <li>3. Oranges (including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lemons and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from Californi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1 (SCU 1)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om California, USA to Thailand.</li> <li>4. Oranges (including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and lemon (excluding sour lemon, <i>Citrus limon</i>) from Florid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2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Florida, USA to Thailand.</li> <li>5. Oranges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lemons, limes, and grapefruit (including pommelo) from Arizon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4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Arizona, USA to Thailand.</li> <li>6. Citrus seeds from California, USA, French, Spain, Israel, South Africa and Australi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ccompan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li> </ol>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Coconut ( <i>Cocos nucifera</i> )	Central America East Africa Guam India Philippines South America West Indies West Africa	1. Preserved food. 2. Finished products of coconut plants which have been processed by the method declared by the owner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before the import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decided the same are free of plant pests. 3. Dehusked coconut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3	Plants in the genus <i>Gossypium</i>	Africa Central America Mexico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West Indies	Cotton lint imported for industrial use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a Phytosanitary Certificate of the country of origin.
4	Plants in the genus <i>Hevea</i> such as rubber etc. and carrier such as Fresh latex, Cup lump, Scrap.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es	
5	Cassava ( <i>Manihot esculenta</i> )	Africa Brazil Indonesia	Preserved food Flour Sago
6	Plants in the genus <i>Oryza</i>	Central America Ceylon India Japan Philippines Republic of China South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West Africa West Indies	1. Preserved food 2. Finished products of plants in the genus <i>Oryza</i> spp.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3. Rice, broken-milled rice and steamed rice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b>Genetically modified plant</b>		
1	Plants in the genus <i>Agrosti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i>Actinidia chinensis</i> Planch	All countries	
3	<i>Allium cepa</i> L.	All countries	
4	Plants in the genus <i>Amelanchier</i>	All countries	
5	<i>Ananus comosus</i> (L.) Merr.	All countries	
6	<i>Apium graveolens</i> var. <i>dulce</i> (Mill.) D.C.	All countries	
7	<i>Arabidopsis thaliana</i> L.	All countries	
8	Plants in the genus <i>Arachis</i>	All countries	
9	<i>Armoracia rusticana</i> P. Gaertner, Meyer & Scherb.	All countries	
10	<i>Asparagus officinalis</i> Linn.	All countries	
11	<i>Atropa belladonna</i> L.	All countries	
12	<i>Avena sativa</i> L.	All countries	
13	<i>Beta vulgaris</i> L. sub sp. <i>vulgaris</i>	All countries	
14	Plants in the genus <i>Brassica</i>	All countries	
15	Plants in the genus <i>Camellia</i>	All countries	
16	Plants in the genus <i>Capsicum</i>	All countries	
17	Papaya ( <i>Carica papaya</i> L.)	All countries	
18	Plants in the genus <i>Chrysanthemum</i>	All countries	
19	<i>Cichorium intybus</i> L.	All countries	
20	<i>Citrullus lanatus</i> (Thumb) Matsun & Nakai	All countries	
21	Plants in the genus <i>Citrus</i>	All countries	
22	<i>Cocos micifera</i> L.	All countries	
23	Plants in the genus <i>Coffea</i>	All countries	
24	Plants in the genus <i>Cucumis</i>	All countries	
25	Plants in the genus <i>Cucurbita</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6	<i>Daucus carota</i> L.	All countries	
27	Plants in the genus <i>Dendranthema</i>	All countries	
28	<i>Dianthus caryophyllus</i> L.	All countries	
29	<i>Elaeis guineensis</i> Jacq.	All countries	
30	Plants in the genus <i>Eucalyptus</i>	All countries	
31	Plants in the genus <i>Fortunella</i>	All countries	
32	Plants in the genus <i>Fragaria</i>	All countries	
33	Plants in the genus <i>Gladiolus</i>	All countries	
34	<i>Glycine max</i> L.	All countries	1. Preserved food 2. Soybean use as raw material to produce animal feed or food for human consumption or use for industrial purpose
35	Plants in the genus <i>Gossypium</i>	All countries	
36	Plants in the genus <i>Helianthus</i>	All countries	
37	Plants in the genus <i>Hevea</i>	All countries	
38	Plants in the genus <i>Hordeum</i>	All countries	
39	Plants in the genus <i>Ipomoea</i>	All countries	
40	Plants in the genus <i>Juglans</i>	All countries	
41	<i>Lactuca sativa</i> L.	All countries	
42	<i>Lens culinaris</i> Medik.	All countries	
43	Plants in the genus <i>Linum</i>	All countries	
44	<i>Liquidambar styraciflua</i> L.	All countries	
45	Plant in the genus <i>Lupinus</i>	All countries	
46	<i>Lycopersicon esculentum</i> Miller	All countries	
47	Plant in the genus <i>Malus</i>	All countries	
48	<i>Manihot esculenta</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Crantz.		
49	Plant in the genus <i>Musa</i>	All countries	
50	<i>Medicago sativa</i> L.	All countries	
51	Tobacco ( <i>Nicotiana tabacum</i> L.)	All countries	
52	Plant in the family Orchidaceae	All countries	
53	Plant in the genus <i>Oryza</i>	All countries	
54	Plant in the genus <i>Papaver</i>	All countries	
55	Plant in the genus <i>Pelargonium</i>	All countries	
56	Plants in the genus <i>Penunia</i>	All countries	
57	Plant in the genus <i>Phaseolus</i>	All countries	
58	Plant in the genus <i>Picea</i>	All countries	
59	<i>Pisum sativum</i>	All countries	
60	Plant in the genus <i>Poncirus</i>	All countries	
61	Plants in the genus <i>Populus</i>	All countries	
62	Plant in the genus <i>Prunus</i>	All countries	
63	Plant in the genus <i>Pyrus</i>	All countries	
64	<i>Ribes nigrum</i>	All countries	
65	Plant in the genus <i>Ricinus</i>	All countries	
66	Plant in the genus <i>Rosa</i>	All countries	
67	Plants in the genus <i>Rubus</i>	All countries	
68	Plants in the genus <i>Saccharum</i>	All countries	
69	Plants in the genus <i>Solanum</i>	All countries	
70	Plants in the genus <i>Sorghum</i>	All countries	
71	Plants in the genus <i>Stylosanthes</i>	All countries	
72	<i>Theobroma cacao</i> L.	All countries	
73	<i>Torenia fournieri</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b>Lind.</b>		
74	Plants in the genus <i>Trifolium</i>	All countries	
75	Plants in the genus <i>Triticum</i>	All countries	
76	Plants in the genus <i>Vaccinium</i>	All countries	
77	Plants in the genus <i>Vigna</i>	All countries	
78	Plants in the genus <i>Vitis</i>	All countries	
79	Corn ( <i>Zea mays</i> L.)	All countries	1. Preserved food 2. Maize use as raw material to produce animal feed or food for human consumption or use for industrial purpose
80	Plants in the genus <i>Zoysia</i>	All countries	
	<b>Carrier</b>		
1	Soil	All countries	-
2	Organic fertilizer	All countries	1. Organic fertilizer from animals except excrement of animal. 2. Organic fertilizer from plants which have been processed by the method declared by the owner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before the import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decided the same are free of plant pests.
	<b>Plant pest</b>		
	<b>Fungi</b>		
1	<i>Ascochyta gossypii</i>	All countries	
2	<i>Asperisporium caricae</i>	All countries	
3	<i>Calonectria rigidiuscula</i>	All countries	
4	<i>Ceratocystis fimbriata</i>	All countries	
5	<i>Crimipellis perniciososa</i>	All countries	
6	<i>Deuterophoma tracheiphila</i>	All countries	
7	<i>Elsinoe australi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8	<i>Ephelis oryzae</i>	All countries	
9	<i>Haplobasidium musae</i>	All countries	
10	<i>Microcyclus ulei</i>	All countries	
11	<i>Moniliophthora roreri</i>	All countries	
12	<i>Mycosphaerella fijiensis</i>	All countries	
13	<i>Phaeoramularia angolensis</i>	All countries	
14	<i>Phellinus noxius</i>	All countries	
15	<i>Phymatotrichum omnivorum</i>	All countries	
16	<i>Phytophthora citricola</i>	All countries	
17	<i>Phytophthora hibernalis</i>	All countries	
18	<i>Phytophthora katsurae</i>	All countries	
19	<i>Rosellinia bunodes</i>	All countries	
20	<i>Rosellinia pepo</i>	All countries	
21	<i>Septoria limomum</i>	All countries	
22	<i>Sphaceloma manihoticola</i>	All countries	
23	<i>Uromyces musae</i>	All countries	
	<b>Bacteria</b>		
1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michiganensis</i>	All countries	
2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nebraskensis</i>	All countries	
3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sepedonicus</i>	All countries	
4	<i>Liberobacter africanum</i>	All countries	
5	<i>Pseudomonas rubrisubalbicans</i>	All countries	
6	<i>Pseudomonas corrugate</i>	All countries	
7	<i>Xanthomonas axonopodis</i> pv. <i>citrumelo</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8	<i>Xanthomonas campestris</i> pv. <i>cassavae</i>	All countries	
9	<i>Xanthomonas campestris</i> pv. <i>celebensis</i>	All countries	
10	<i>Xylella fastidiosa</i>	All countries	
	<b>Protozoa</b>		
1	<i>Nosema bombycis</i>	All countries	
2	<i>Phytomonas staheli</i>	All countries	
	<b>Virus</b>		
1	Afric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2	Banana streak virus	All countries	
3	Cassava brown streak virus	All countries	
4	Cassava common mosaic virus	All countries	
5	Cassava frog skin virus	All countries	
6	Cassava Ivorian virus	All countries	
7	Cassava vein mosaic virus	All countries	
8	Citrus leaf rugose virus	All countries	
9	Citrus leprosis virus	All countries	
10	Citrus psorosis virus	All countries	
11	Citrus ringspot virus	All countries	
12	Citrus rubbery wood virus	All countries	
13	Citrus tatter leaf virus	All countries	
14	Citrus variegation virus	All countries	
15	Citrus vein enation virus	All countries	
16	Cocoa necrosis virus	All countries	
17	Cocoa red mottle virus	All countries	
18	Cocoa swollen shoot virus	All countries	
19	Cocoa yellow mosaic virus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0	Cocoa yellow vein banding virus	All countries	
21	Coconut foliar decay virus	All countries	
22	Cotton anthocyanosis virus	All countries	
23	Cotton leaf crumple virus	All countries	
24	Cotton leaf mosaic virus	All countries	
25	Cotton leaf mottle virus	All countries	
26	Cotton stenosis virus	All countries	
27	Cotton terminal stunt virus	All countries	
28	East Afric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29	Indi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30	Maize Rayado fino virus	All countries	
31	Papaya bunchy top virus	All countries	
32	Papaya leaf curl virus	All countries	
33	Papaya mosaic virus	All countries	
34	Papaya waiialua virus	All countries	
35	Rice dwarf virus	All countries	
36	Rice hoja blanca virus	All countries	
37	Rice yellow mottle virus	All countries	
38	Satsuma dwarf virus	All countries	
39	Sugarcane ramu stunt virus	All countries	
40	Tomato black ring virus	All countries	
41	Tomato bushy stunt virus	All countries	
42	Tomato ring spot virus	All countries	
43	Tomato spotted wilt virus	All countries	
	<b>Viroid</b>		
1	Citrus cachexia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viroid		
2	Citrus exocortis viroid	All countries	
3	Coconut cadang-cadang viroid	All countries	
4	Potato spindle tuber viroid	All countries	
5	Tinangaja viroid	All countries	
	<b>Mycoplasma</b>		
1	Banana marbling disease MLO	All countries	
2	Citrus witches broom MLO	All countries	
3	Coconut lethal yellowing MLO	All countries	
4	Sugarcane grassy shoot MLO	All countries	
	<b>Insect</b>		
1	<i>Anastepha fraterculus</i>	All countries	
2	<i>Anastepha ludens</i>	All countries	
3	<i>Anastepha oblique</i>	All countries	
4	<i>Anastepha suspensa</i>	All countries	
5	<i>Anthonomus grandis</i>	All countries	
6	<i>Anthonomus vestitus</i>	All countries	
7	<i>Artona catoxantha</i>	All countries	
8	<i>Bactrocera musae</i>	All countries	
9	<i>Bactrocera tryoni</i>	All countries	
10	<i>Caliothrips masculinus</i>	All countries	
11	<i>Ceratitidis capitata</i>	All countries	
12	<i>Ceratitidis cosyra</i>	All countries	
13	<i>Ceratitidis quinaria</i>	All countries	
14	<i>Ceratitidis rosa</i>	All countries	
15	<i>Diatraea saccharalis</i>	All countries	
16	<i>Erinnyis ello</i>	All countries	
17	<i>Leptopharsa heveae</i>	All countries	
18	<i>Lissorhoptrus oryzophilus</i>	All countries	
19	<i>Opogona sacchari</i>	All countries	
20	<i>Oryctes boas</i>	All countries	
21	<i>Oryctes monocero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2	<i>Pachymerus nucleorum</i>	All countries	
23	<i>Panthomorus cervinus</i>	All countries	
24	<i>Phenacoccus manihoti</i>	All countries	
25	<i>Prostephanus truncatus</i>	All countries	
26	<i>Pseudothraupis devastans</i>	All countries	
27	<i>Pseudothraupis wayi</i>	All countries	
28	<i>Rhynchophorus palmarum</i>	All countries	
29	<i>Sacadodes pyralis</i>	All countries	
30	<i>Scirtothrips aurantii</i>	All countries	
31	<i>Sesamia calamistis</i>	All countries	
32	<i>Sesamia cretica</i>	All countries	
33	<i>Trioza erythrae</i>	All countries	
34	<i>Trogoderma granarium</i>	All countries	
	<b>Mite</b>		
1	<i>Aceria guerreronis</i>	All countries	
2	<i>Aceria sheldoni</i>	All countries	
3	<i>Mononychellus tanajoa</i>	All countries	
4	<i>Oligonychus peruvianus</i>	All countries	
	<b>Nematode</b>		
1	<i>Anguina agrostis</i>	All countries	
2	<i>Anguinagraminis</i>	All countries	
3	<i>Anguina tritici</i>	All countries	
4	<i>Aphelenchoides arachidis</i>	All countries	
5	<i>Belonolaimus longicaudatus</i>	All countries	
6	<i>Bursaphelenchus xylophilus</i>	All countries	
7	<i>Cactodera cacti</i>	All countries	
8	<i>Ditylenchus destructor</i>	All countries	
9	<i>Ditylenchus dipsaci</i>	All countries	
10	<i>Dolichodorus heterocephalu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11	<i>Globodera pallida</i>	All countries	
12	<i>Globodera rostochiensis</i>	All countries	
13	<i>Heterodera avenae</i>	All countries	
14	<i>Heterodera glycines</i>	All countries	
15	<i>Heterodera graminis</i>	All countries	
16	<i>Heterodera oryzae</i>	All countries	
17	<i>Heterodera oryzicola</i>	All countries	
18	<i>Heterodera punctata</i>	All countries	
19	<i>Heterodera sacchari</i>	All countries	
20	<i>Heterodera schachtii</i>	All countries	
21	<i>Heterodera sorghi</i>	All countries	
22	<i>Heterodera trifolii</i>	All countries	
23	<i>Hirschmaniella miticausa</i>	All countries	
24	<i>Hoplolaimus columbus</i>	All countries	
25	<i>Hoplolaimus indicus</i>	All countries	
26	<i>Longidorus sylphus</i>	All countries	
27	<i>Meloidogyne camelliae</i>	All countries	
28	<i>Meloidogyne chitwooki</i>	All countries	
29	<i>Meloidogyne coffeicola</i>	All countries	
30	<i>Meloidogyne graminis</i>	All countries	
31	<i>Nacobbus aberrans</i>	All countries	
32	<i>Pratylenchus coffeae</i>	All countries	
33	<i>Rhadinaphelenchus cocophilus</i>	All countries	
34	<i>Rotylenchulus macrodoratus</i>	All countries	
35	<i>Scutellonema bradys</i>	All countries	
36	<i>Trichodorus viruliferus</i>	All countries	
37	<i>Xiphinema americanum</i>	All countries	
38	<i>Xiphinema diversicaudatum</i>	All countries	
	<b>Weed</b>		
1	<i>Avena fatua</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i>Chenopodium album</i>	All countries	
3	<i>Cirsium arvense</i>	All countries	
4	<i>Cirsium vulgare</i>	All countries	
5	<i>Galium aparine</i>	All countries	
6	<i>Polygonum convolvulus</i>	All countries	
7	<i>Rumex acetosella</i>	All countries	
8	<i>Rumex obtusifolius</i>	All countries	
9	<i>Salvinia molesta</i>	All countries	
10	<i>Thlaspi arvense</i>	All countries	
	<b>Unknown Etiology</b>		
1	Bract mosaic diseases	All countries	
2	Bristle top	All countries	
3	Citrus blight	All countries	
4	Cotton blue disease	All countries	
5	Dryout rot	All countries	
6	Head drop	All countries	
7	Little leaf	All countries	
8	Little mottle	All countries	
9	Natuna wilt	All countries	
10	Sacorro wilt	All countries	
11	Tatipaka wilt	All countries	

### 〈 붙임 3 : 자료출처 〉

#### ○ 웹사이트

- 태국 관세청 : [www.customs.go.th](http://www.customs.go.th)

#### ○ 관련법규

- 식품법(The Food Act)
- 식품 라벨링규정(Labels)
- 즉석식품 라벨링규정(Labeling of some kinds of ready-to-eat foods)
- 잔류농약 기준(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관세법(The Customs Act)
- 검역법(The Quarantine Act)
- 식물검역법(The Plant Quarantine Act)

#### ○ 관련책자

- 태국의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한-태 상공회의소, 2009.06)
- 태국의 통상환경 연구(한국 조세연구원, 2011.12)